# 탄 원 서

| | |
|---|---|
| **사 건 번 호** | 2026노2154 (제1심 2026고합87) |
| **사 건 명**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
| **피 고 인** | 이상현 / 전 육군 준장 |
| **당 시 보 직** |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
| **탄 원 인** |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
| **피고인과 관계** | _____ |
| **탄원인 주소** | _____ |
| **연 락 처** | _____ |
| **제 출 처** |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
| **법 원 주 소** |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 1. 탄원의 취지

탄원인은 피고인 이상현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각 구성요건을 피고인의 행위와 인식에 비추어 다시 살펴주시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만일 유죄 판단이 유지된다면 행위의 범위와 개인적 책임에 상응하도록 형을 감경하는 등 선처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회 의결권과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는 탄원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전체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판단과 한 명의 피고인에게 귀속될 형사책임은 구별되어야 하며, 그 구별은 개별적 증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 탄원의 이유

### 2-1. 1심 판단과 사건의 특수성

2026년 8월 27일 1심은 피고인이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하고, 국회 봉쇄 및 건물 안 인원 퇴거를 지시한 사정을 인정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한 명령이 계엄해제 의결의 저지와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불리한 판단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항소심에서 지시의 정확한 문언과 시각, 전달 상대, 실현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전사령부의 지휘계통을 통해 처음 통보된 출동 임무와 현장에서 이어진 후속 지시가 같은 내용이었는지, 피고인이 각각의 시점에 국회의 진행 상황과 명령의 목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통화내역·현장 영상·지휘계통의 진술을 대조하여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2-2. 무죄 판단을 위해 검토할 사항

내란중요임무종사 여부는 군 지휘관의 신분만으로 결정될 수 없고,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한 인식, 그 목적에 연결된 중요임무의 실질적 수행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병력의 출동, 국회 진입 지시, 표결 저지 의도의 인식이라는 각 요소가 언제 어떤 증거로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심리해 주십시오.

특히 강제 진입 및 사람을 내보내라는 취지로 알려진 발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므로 그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발언 전후의 통화, 현장 부대의 움직임, 피고인의 추가 명령 또는 중단 조치까지 연속적으로 살펴, 1심이 인정한 고의와 실행 범위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다시 판단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2-3. 직권남용 혐의의 별도 심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행사한 직권의 구체적 내용, 부하에게 명령한 특정 행위, 그 행위가 부하의 직무상 의무에 속하지 않는 이유, 실제로 방해된 권리행사를 각각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 혐의에 관한 평가와 별도로 해당 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거 중 서로 일치하지 않는 명령시각·보고순서·현장 이행 결과가 있다면 가장 불리한 해석만을 택하기보다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의문이 남는 부분은 엄격한 증명 원칙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2-4. 유죄가 유지될 경우의 예비적 선처

상급자의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백히 위법한 행동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최초 명령을 받은 경위, 판단에 허용된 시간, 당시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확대한 행위, 지시를 중지시킬 수 있었던 현실적 여건은 책임의 정도를 정할 때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1심 징역 10년의 상당성을 재검토하실 때 실제 실행된 행동과 실행되지 않은 지시, 결과 발생의 범위, 상급 지휘관 및 현장 지휘관 사이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구별해 주십시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복무 이력과 피고인의 현 상황, 법정에서의 태도에 관한 자료가 적법하게 제출된다면 그 내용에 한정하여 양형에 참작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 2-5.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해 주실 사항

국회 현장과 상급 지휘부의 통신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지시를 발한 사람·받은 사람·실제 실행한 사람을 구분한 시간표로 재구성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특히 병력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과 후의 지시가 달라졌는지, 표결이 진행된 시점에 피고인이 알았던 사실은 무엇인지 구체적 기록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피고인에게 불리한 녹취와 증언이 있다면 그 신빙성을 엄격히 심리하시되, 그 발언 이후 실행 범위와 중단 경위도 하나의 연속된 사실관계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양형 판단이 서로 혼동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 3. 결어

재판부께서 1심의 불리한 사실인정을 포함해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시되, 피고인 이상현에게 귀속되는 고의와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죄 판단을 유지하시더라도 개별 책임을 세심히 가려 가능한 범위에서 형을 감경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탄원인은 재판부의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국가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엄정함과 개인에게 정확한 형사책임을 묻는 신중함이 함께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인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귀중**